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 9. 13.
사회건설위원회

1. 審 査 經 過

- 가. 제출일자 : 2006년 8월 28일
-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06년 9월 1일
- 라. 상정일자 : 제123회(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2006년 9월 8일)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 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이 광 세)

가. 제 안 이 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50호에 의거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부합하지 않은 일부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 요 내 용

-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에서 “소관국장”으로, 부위원장을 “교통지도과장”에서 “소관과장”으로 개정 (안 제3조제2항)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이 남 식)

-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50호(2005.4.6)에 의거 직제가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 안 제3조제2항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을 “소관국장”으로, 부위원장을 “교통지도과장”에서 “소관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나 명확성의 원칙과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修正案 要旨

가. 수정이유

- 명확성의 원칙과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여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3조제2항 중 “소관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소관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수정한다.

5. 審査結課 : 修正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호
----------	----------

제안년월일 : 2006. 9. 8.

제출자 : 신흥식 위원 외 1인

1. 수정이유

명확성의 원칙과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개정안의 제3조제2항 중 “소관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소관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수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개정안의 제3조제2항 중 “소관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소관과장”
을 “교통행정과장”으로 수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u>건설교통국장</u>, 부위원장은 <u>교통지도과장</u>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 2. (생략)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관국장 <u>소관과장</u> 1. ~ 2.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② 건설교통국장 <u>교통행정과장</u> 1. ~ 2.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
----------	---

제출년월일 : 2006. 8. 2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50호에 의거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부합하지 않은 일부조문을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에서 “소관국장”으로,
부위원장을 “교통지도과장”에서 “소관과장”으로 개정 (안 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 생략

- 사 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히 행정내부의
직제개편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생략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소관국장”으로 하고, “교통지도과장”을 “소관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u>건설교통국장</u>, 부위원장은 <u>교통지도과장</u>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 2. (생략)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u>소관국장</u> ----- <u>소관과장</u> ----- -----. 1. ~ 2. (현행과 같음)